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신규) : 24억원, PoC(과제기획) 40개
(PoC 과제 중 R&D 지원과제 20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지원대상**

○ **(주관 ·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으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과제기획(PoC)		2개월 이내	10백만원 이내
	R&D	Track1	최대 3년	연간 2억원 이내
		임상	최대 2년	연간 1억원 이내
		Track2	최대 2년	연간 2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목)**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억원, 40개 과제

구 분		구분	선정과제 수
내역사업	**세부과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1단계) 과제기획*	PoC	**40개**
	(2단계) R&D**	Track1	**18개 내외**
		Track2	**2개 내외**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품목지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품목은 <참고1> 참조

- **(Track1)** ①신규 원료의 개발(개별인정형), ②고시형 또는 ③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추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3년+2년*)**

* Track1 지원 종료 후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 2년 간 임상 후속 지원

(참고)
①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된 기능성 원료 (고시형 원료 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022-69호)」 참조)
②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를 검색
*** 검색방법 : 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개별인정형 원료**

- **(Track2)**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 등 기능성 향상을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2년)

【 대상과제 선정예시(Track2) 】

- 전통적인 섭취 경험, 알려진 부작용 등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기능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특허, 논문 등)가 있는 원료
- 대량생산(또는 재배) 기술이 확보(검증)된 원료
- 기존 기능성 원료의 품질 가치(value)를 높이는 연구 결과를 보유한 원료

□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table>
<tr><th>구분</th><th>(1단계) 과제기획</th><th>(2단계)
R&D 지원</th><th>(3단계) 임상지원</th></tr>
<tr><td rowspan="3">Track1</td><td>① 신규원료개발</td><td>① 신규원료개발
(3년, 6억)</td><td rowspan="3">후속 임상지원
(2년,2억)</td></tr>
<tr><td>② 개별인정원료+기능성추가</td><td>② 개별인정원료+기능성추가
(3년, 6억)</td></tr>
<tr><td>③ 고시형원료+기능성 추가</td><td>③ 고시형원료+기능성 추가
(3년, 6억)</td></tr>
<tr><td>Track2</td><td>기존 원료의 기능성 향상</td><td>기존 원료 기능성
향상(고도화)(2년,4억)</td><td></td></tr>
</table>

* 임상지원 : Track1의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후 후속 지원 (Track1 과제에 한함)

○ PoC(과제기획, 1단계) :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기술지원 신청(연구개발지원단) : 한국국제생명과학회(https://ilsikorea.org/) 접속, 우측 상단의 '과학적 학술활동 및 연구과제' 선택 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기술지원'으로 신청

※ (참고)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업체 현황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khsa.or.kr) → 산업 정보 → 컨설팅 업체 정보

○ R&D(2단계)

① Track1(R&D+임상)

- (R&D, 3년)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추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임상지원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심사 조력

- (임상, 2년) R&D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후 후속 임상지원

② (Track2)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 등 기능 향상을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PoC(1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백만원(2개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없음

○ **R&D(2단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으로 산정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Track1 (36개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연차별 연구기간
		합계	현금	현물		
부담비율	**75%**	**25%**	50%	50%	100%	
1차년	**100**	**33.4**	16.7	16.7	133.4	6개월
2차년	**200**	**66.6**	33.3	33.3	266.6	12개월
3차년	**200**	**66.6**	33.3	33.3	266.6	12개월
4차년	**100**	**33.4**	16.7	16.7	133.4	6개월
합계	**600**	**200**	100	100	800	36개월

☞ **R&D(2단계)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시행 내용을 과제 협약 시 반영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과 정부예산과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2차년도부터 12개월 지원예정으로 2단계 과제 신청 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일괄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2단계 과제(Track1, 2)의 1차년도는 과제 개발 기간은 '23.7.1~'23.12.31 예정(6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정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5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3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신청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목)

○ 신청·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 **2단계 R&D 신청·접수는 1단계 과제기획 수행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시행계획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단계 과제기획(PoC)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 2단계 R&D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④	연구기술서(식약처서식)		O	
⑤	연구개발지원단 기업진단보고서		O	
⑥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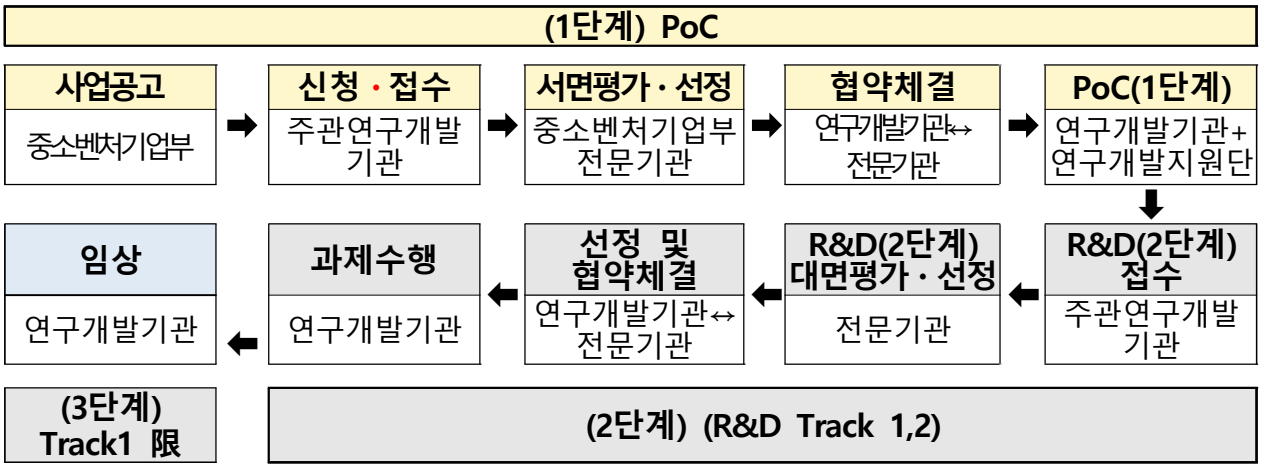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지원단) 한국국제생명과학회

**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선정 평가방법

○ 1단계 (과제기획) : 서면평가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연구 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

$$\text{평가점수} = \frac{\text{서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2단계 (R&D평가) : 대면평가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규제기준의 적합성, 기능성 원료 인정 가능성,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R&D 선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대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평가 기준

○ 평가단계별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배점)	
	Track 1	Track 2
PoC (1단계)	· 기능성원료 인정 가능성(40) · 선행연구 적정성(30) · 결과물의 파급효과(30)	· 기획 필요성(30) · 개발 우수성(30) · 실현가능성(20) · 연구개발역량(20)
R&D (2단계)	· 개발목표 및 필요성(20) · 개발계획의 구체성(20) · 기능성 원료 인정가능성(30) · 제품화 가능성(20) · 연구개발 역량(10)	· 개발방향의 적정성(15) · 개발접근방법의 적정성(25) · 사업화계획 가능성(10) · 선행연구 우수성(10) · 연구개발 역량 및 윤리(25) · 경제 · 기술적 파급효과(10)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5)

○ 동점자 처리 기준

- (PoC, Track1)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능성원료 인정가능성>선행연구 적정성>결과물의 파급효과 항목이 높은 순으로 결정
- (PoC, Track2)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개발우수성>기획필요성>실현가능성 >연구개발역량 항목이 높은 순으로 결정
- (R&D, Track1)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능성원료 인정가능성>개발목표 및 필요성>개발계획의 구체성>연구개발역량>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R&D, Track2)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개발접근방법의 적정성>개발방향의 적정성>사업화계획가능성>경제 · 기술적 파급효과>연구개발역량 및 윤리>연구개발비 집행계획>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과제 확정

○ (PoC, 1단계) 선정평가(서면)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R&D) 선정평가(대면) 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5. 유의사항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동시수행 과제 수

①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졸업제 해당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R&D기획),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② 상기 ①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상기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중소기업 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 에서 제외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에서 제외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⑥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⑧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동 소유로 함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가·감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관리지침 적용**

※ 가·감점은 2단계 R&D 대면평가시에만 적용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2단계 과제 접수마감시 제출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6. R&D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7.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건강기능식품기술개발 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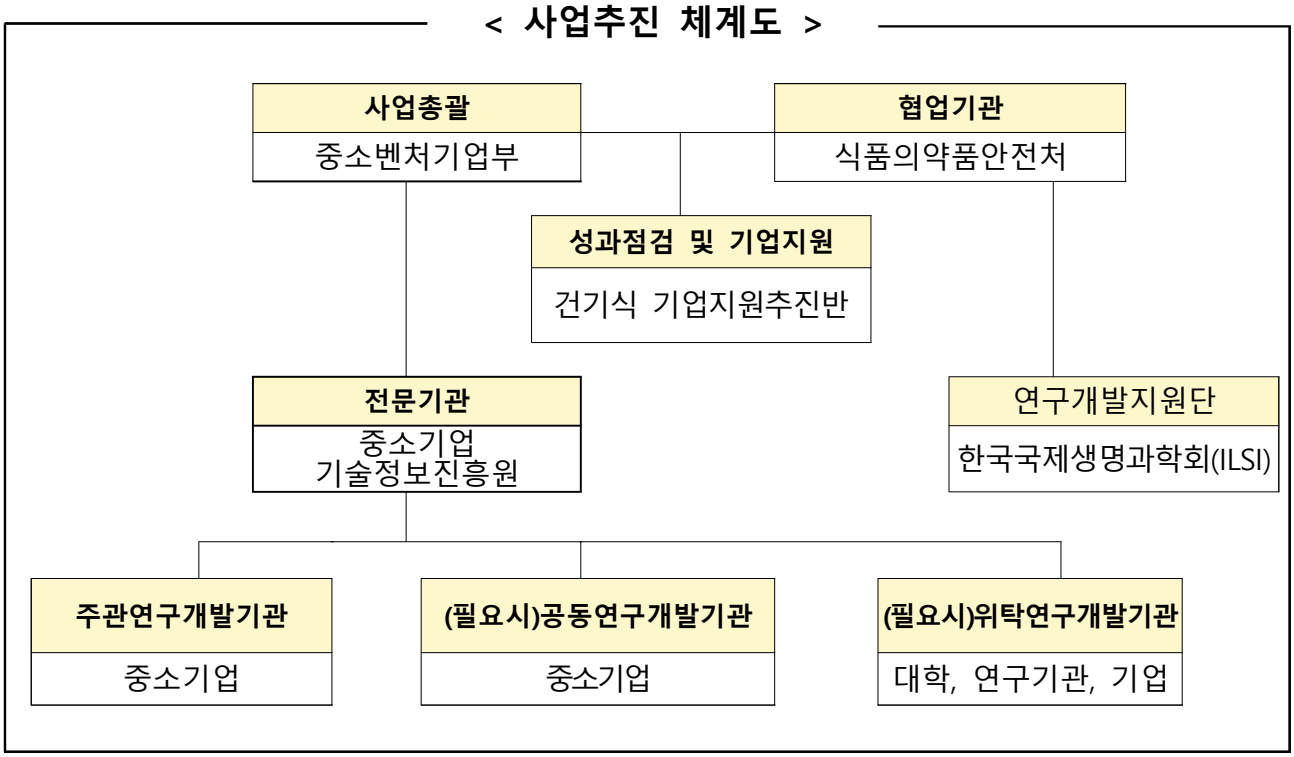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통합연구 지원기관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IRIS) 신청・접수	(국번없이)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목록(고시형, 개별인정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68개)

*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022-69호)

구분	건기식 기능성 원료	구분	건기식 기능성 원료
1	인삼	35	귀리식이섬유
2	홍삼	36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3	엽록소 함유 식물	37	대두식이섬유
4	클로렐라	38	목이버섯식이섬유
5	스피루리나	39	밀식이섬유
6	녹차추출물	40	보리식이섬유
7	알로에 전잎	41	아라비아검
8	프로폴리스추출물	42	옥수수겨식이섬유
9	코엔자임Q10	43	이눌린/치커리추출물
10	대두이소플라본	44	차전자피식이섬유
11	구아바잎 추출물	45	폴리덱스트로스
12	바나바잎 추출물	46	호로파종자식이섬유
13	은행잎 추출물	47	알로에 겔
14	밀크씨슬 추출물	48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15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49	키토산/키토올리고당
16	EPA 및 DHA 함유 유지	50	프락토올리고당
17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51	프로바이오틱스
18	레시틴	52	홍국
19	스쿠알렌	53	대두단백
20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54	테아닌
21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55	엠에스엠
2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56	폴리감마글루탐산
23	매실추출물	57	히알루론산
24	공액리놀레산	58	홍경천 추출물
25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59	빌베리 추출물
26	마리골드꽃추출물	60	마늘
27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61	라피노스
28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62	분말한천
29	포스파티딜세린	63	크레아틴
30	글루코사민	64	유단백가수분해물
31	NAG	65	상황버섯추출물
32	뮤코다당·단백	66	토마토추출물
33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67	곤약감자추출물
34	글루코만난	68	회화나무열매추출물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를 검색

*** 검색방법 : foodsafetykorea.go.kr→ 식품 · 안전→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개별인정형 원료**

참고2 가·감점 항목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사업특화	식약처 기능성 원료로 인정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2점	협업기관 확인
소재부품 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 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종합평점에 반영하지 않음